

가천약학연구원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본 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 설치된 가천약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원의 역할) 연구원은 약학대학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약학의 기초 연구, 질병의 원인 규명과 치료제 개발연구 등 약학 분야 전반의 연구와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약학 분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연구원의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학 전반에 관한 기초연구 사업
2. 천연약품, 생물약품, 합성약품의 개발 및 제제개발에 관한 연구 사업
3. 약품의 효능과 안전성 및 약물대사에 관한 연구 사업
4. 약물의 독성 및 신체 면역계의 영향에 관한 연구 사업
5. 약물의 제형 및 제제연구를 통한 약물전달 연구 사업
6.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 연구 사업
7. 약품 기기분석 및 공동연구기자재의 관리 운영 사업
8. 실험동물의 관리 및 시설장비의 관리 운영 사업
9.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관리 운영 사업
10. 임상 및 보건사회 약학에 관한 연구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①연구원은 산하에 약학연구소, 신약개발연구소, 인프라지원부를 둔다.

②연구원은 주요 사항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연구원에는 연구소장, 인프라지원부장을 두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참여교수를 둘 수 있다.

제5조(연구원장 등) ①연구원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약학대학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1-26~2 제5편 부설연구기관

②연구소장과 인프라지원부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원장의 추천과 약학대학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통할한다.

④연구소장과 인프라지원부장은 연구원장을 보좌하며,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참여 교수) ①참여 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 연구원의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로서 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한 전공분야 교수를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②참여 교수의 임기는 연구 개발과제의 사업기간으로 하며, 연구기간 동안의 책임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연구인력 구성) ①연구원에는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전문가를 겸임교원, 외래교수와 연구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②연구원에는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한다.

③연구원에는 연구와 행정 지원을 위하여 직원과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

제8조(약학연구소) ①약학연구소에는 기초약학 연구부, 분자약학 연구부, 의약품안전성 및 효능 연구부, 독성면역학 연구부, 약품제제 연구부, 임상약학 연구부, 보건사회약학 연구부를 둔다.

②약학연구소의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약학 연구부는 약학 전반에 관한 기초 연구 사항
2. 분자약학 연구부는 천연약품, 생물약품, 합성약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 사항
3. 의약품안전성 및 효능 연구부는 약품의 효능과 안전성 및 약물대사에 관한 연구 사항
4. 독성면역학 연구부는 약물의 독성 및 신체 면역계의 영향에 관한 연구 사항
5. 약품제제 연구부는 약물의 제형 및 제제연구를 통한 약물전달 연구 사항
6. 보건사회약학 연구부는 약물보건학 및 약물사회학 연구 사항
7. 임상약학 연구부는 약물의 임상적 적용에 관한 연구 사항

제9조(신약개발연구소) ①신약개발연구소에는 분자표적-활성 검색부, 후보물질 개발부, 약리-약동학 연구부, 신약제제 개발부를 둔다.

②신약개발연구소의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자표적-활성 검색부는 새로운 신약의 표적 발굴 및 검증, 그리고 활성 검색에 관한 연구사항
2. 후보물질 개발부는 저분자물질, 생물학적 의약품 및 기타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에 관한 연구사항
3. 약리-약동학 연구부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약리, 약동학, 독성에 관한 연구 사항
4. 신약제제 개발부는 신약후보물질이 제형 및 제제에 관한 연구 사항

제10조(인프라지원부) ①인프라지원부에는 행정실, 중앙기기실, 실험동물실, 산업화 지원실을 둔다.

②인프라지원부의 각 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실은 본 연구원 전반의 행정에 대한 운영 사항
2. 산업화지원실은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 연구 사항
3. 중앙기기실은 약품 기기분석 및 공동연구기자재의 관리 운영 사항
4. 실험동물실은 실험동물의 관리 및 시설장비의 관리 운영 사항

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

제11조(운영위원회) ①연구원에는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되며, 약대학장 및 각 연구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산하 연구소 운영과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5-1-26~4 제5편 부설연구기관

제13조(자문위원회) ①연구원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은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및 참여교수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위원회) 본 연구원의 약학연구 및 윤리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교 육

제15조(연구수행을 위한교육) 연구원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① 실험 안전 교육 (초기, 2년마다 재교육)
- ② 방사선안전교육 (초기, 1년마다 재교육)
- ③ 동물 취급과 실험교육 (초기, 1년마다 반복)
- ④ 연구윤리 교육 (매년)
- ⑤ Internet 사용관련 교육 (매년)
- ⑥ 성희롱 예방 교육 (매년)

제 5 장 연구비 및 간접경비 등

제16조(연구비 및 간접경비)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부터 공모에 의해 수혜한 연구비와 이에 준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국내·외 연구비를 수혜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라 연구 간접 경비를 납부한다.

제17조(기부금 및 위탁 연구기금) 연구원 소속의 교원이 외부로부터 기부금이나 위탁연구 기금을 수혜한 경우 기금은 산학협력단의 별도 관리 하에 해당 교원의 연구에 국한하여 사용한다.

제18조(핵심 장비 사용료) 연구자가 핵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책정된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한다.

제 6 장 상 별

제19조(상별) ①연구원은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를 매년 표창한다.

②연구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연구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③징계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연구교원의 소외활동

제20조(연구교원의 소외활동) 연구교원의 외부활동은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재 정

제21조(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기금, 본교와 병원 및 재단의 지원금, 외부기관의 찬조금과 기부금, 연구사업 수익, 기타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계 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예산 및 결산) 연구원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3개월 전에 다음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운영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 연구원의 수입·지출에 대한 감사는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보고) 연구원장은 연구비 수혜 및 연구 활동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규정개정 및 준용

제26조(규정개정 등) 연구원의 규정 개정, 해산 및 기타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운영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천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